

회 칙

에드몬튼 한국-캐나다 노인 골프회

2016 년 3 월 19 일

1. 명칭

본회는 에드몬튼 한국-캐나다 노인 골프회 (The Edmonton Korean-Canadian Senior ~~Golf~~ ^{Golf} club)라 칭한다.

2. 조직

2-1. 구성

본회는 회원, 집행부, 이사회, 감사 그리고 규칙 (Rule) 위원회,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2-2. 회원자격

- (1) 현재 에드몬튼 또는 그 인접지역에 (Red Deer 이북) 거주하는 자로서 만 60 세 또는 그 이상의 연령인자.
- (2) 당해 회비를 5 월 31 일까지 납부한자. 단, 당해 5 월 31 일 이전에 부득이한 사정을 집행부에 통보 한 자는 추후 납부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이 부여된다.
- (3) 위의 (1)와 (2)에 열거한 조건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금년의 회원이 될 수 없으며 그들의 본회 가입은 차기 년도에 재검토 할 수 있다.
- (4) 본회를 탈퇴하고 하는 자는 본회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탈퇴 할 수 있다.
- (5) 어떤 경우에도 납부한 회비의 환불은 불가하다.
- (6) 어떤 회원이든 본 회의 명예나 안위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회의 회원자격을 상실 할 수 있다.

2-3. 임원의 임기

- (1) 선출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된다. 하지만 현 임원은 새 임원이 선출되어 임무를 시작할 때까지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2) 모든 인수인계는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 (3) 본회 회장은 임기 만료 시 단 1회에 한해 재임할 수 있다.
- (4) 임명된 임원 중 임기 중에 결원이 있을 시 회장이 재임명하고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5) 결격사항이 없는 회원은 누구라도 본회의 집행부원, 이사, 감사 또는 규칙위원, 특별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단, 선거당일 총회에 참석한 회원만이 본회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을 갖는다.

2-4. 집행부

- (1) 회장은 선관위의 요식 행위에 따라 총회에서 정관 4조 선거 방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선출된 회장은 부회장 및 임원을 임명하고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2) 회장: 회장은 집행부의 장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사업 추진과 모든 회의를 주관하고, 회원 징벌에 관한 이사회 결정을 집행하며, 본회 운영에 관한 모든 결정과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3)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운영에 동참하며, 회장 부재시 회장의 직권을 대행한다. 부회장이 부재 시 회장은 부회장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 (4) 총무: 총무는 본회의 회장의 지휘를 받으며 본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본회의 모든 통신 물과 서류를 관리한다. 그는 본회의 봉인을 관리하고 회장과 함께 또는 회장의 위촉을 받아 봉인과 함께 서명함으로써 본회에 속한 서류의 법적인증을 할 수 있다. 총무의 부재 시 회장은 총무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 (5)재무 : 재무는 본 회의 모든 출입금을 관리하며 본 회가 지정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책임진다. 재무는 본회의 자금에 대한 적절한 회계 및 회계장부를 관리한다. 그는 이사회가 요구하면 수입 지출에 관한 상세한 회계내용을 제시하며 정식으로 감사를 받은 재정상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고 이의 사본을 총무에게 제출하여 본회의 서류로 보관하도록 한다. 본회의 회장은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총무로 하여금 재무 직을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 (6)집행부의 어떤 임원도 그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회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결정으로 임원직을 박탈 할 수 있다. 회장이 그의 직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회 이사장이 주관하는 임시 총회에서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그를 해임할 수 있다.
- (7)본 회가 필요하면 회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외부의 사무원, 기술자 또는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고용 할 수 있다.

2-5. 이사회

- (1)이사회는 7 명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직전 회장과 현회장은 자동이사가 된다.
- (2)이사들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 1 명을 선출한다. 선출된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모든 이사회 회의를 관장하고, 이사회 운영을 책임진다. 또한 집행부 임원을 선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총회시 회의를 관장한다. 신입 집행부의 임원 인준 및 예산과 사업계획을 인준한다.
- (3)이사회는 본회 회칙과 총회의 의결에 의해 주어진 권한 내에서 집행부의 운영을 감독한다. 선관위의 직무를 수행하며 이사장이 선관 위원장이 된다.
- (4)규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부적절한 행위를 한 회원의 처벌에 대한 결정을 하여 회장에게 통보한다.
- (5)필요시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이사장은 최소한 6 개월에 1 회 회의를 소집하여 본회의 운영상태를 논의 하도록 한다. 이사회는 회의 전

2-8. 특별 위원

- (1) 총회에서 2인 이내의 특별위원을 선출하며 회기동안 집행부와 함께 casino 등 특별 업무를 수행한다.
- (2)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집행부와 같이 2년으로 한다.

3. 회의

3-1. 정기총회

- (1) 정기총회는 당해 첫 번째 시합 전이나 첫 번째 시합 당일 회장이 소집한다.
- (2) 정기총회 소집일은 최소한 2주전에 우편, 주간지, 전자통신,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3) 집행부는 정기총회에 예산, 결산, 활동계획 그리고 기타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토론하고 회원들의 인준을 받는다.
- (4) 모든 안건은 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3-2. 임시총회

- (1)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장 또는 회원의 1/3이 서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본회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여 당면한 과제를 논의 처리한다.
- (2) 임시총회를 개최하려면 우편, 구두, 전화, 전자통신, 주간지 또는 기타 방법으로 최소한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회원의 과반수가 참석하면 회의가 성립되며 모든 안건은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선거

(1) 본회의 회원으로써 자격정지가 되지 않은 회원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2) 선거에서의 투표 방법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본인 이외의 대리투표는 할 수 없고,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총회 당일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하되 인준방법은 당일 다수결로 결정한다.

5. 보수

본회의 총회에서 결정 및 공고가 없는 한 본회의 어떤 회원이나 임원도 본회를 위해 봉사한데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없다.

6. 대출권한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행부는 사채권 발행과 같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통해 자금의 차용, 모금 또는 지출확보를 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권력은 본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행사 할 수 있고 특히 사채권은 본회의 특별의결을 통한 재가가 있을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7. 봉인 사용 및 보관

현 회장은 본회의 봉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며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봉인을 사용 할 수 있다.

8. 회계장부 및 서류 검사

모든 회원은 본회의 사무실 또는 본회 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회계장부 및 서류를 검사할 권한이 있다. 회계장부 및 서류검사 요구는 최소한 10 일간의 여유를 두고 요청해야 한다.

9. 회칙 개정

회칙 개정안을 5 인 이상의 연명으로 발의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고 이사회 심의를 거친 후 폐기 및 수정하여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가결된 개정안은 즉시 발효가 된다.

10. 해체

- (1) 본회는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해산 결의안에 찬성하는 경우 해체할 수 있다.
- (2) 해체 후 본회가 지고 있는 부채를 지불하고 남은 기금과 재산은 다른 자선단체에 기증한다.